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개발협력사업의 심사·승인 등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에 개발사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부담금 예산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혁신심의관, 공공혁신과, 윤리경영과 및 일자리경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개발협력과의 명칭을 개발전략과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기획재정부 정원 19명(5급 19명)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7. 0. ~ 7.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개발협력과”를 “개발전략과·개발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조정 및 운용
2.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
3. 지역별·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4.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5.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외 홍보
6.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조정
3.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4.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5.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7.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2조제3항 중 “국제통화과장”을 “금융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057”을 “1,0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47”을 “1,056”으로 하며, 서기관 “67”을 “6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7”을 “88”로, 행정사무관 “384”를 “388”로, 행정주사 “126”을 “128”로, 행정주사보 “21”을 “2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58”을 “1,067”로 하고, 일반직 계 “1,048”을 “1,057”로 하며, 서기관 “67”을 “6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7”을 “88”로, 행정사무관 “402”를 “404”로, 행정주사 “107”을 “111”로, 행정주사보 “22”를 “2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2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18명”을 “16명”으로, “19명”을 “1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3)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4)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6)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2년 2월 28일까지
7)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	6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8) 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생략)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 · 국제기구과 · <u>개발협력과</u>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u>개발전략과</u> <u>· 개발사업과</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 · 조정 및 운용</u>	1. <u>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 · 조정 및 운용</u>
2. <u>삭제</u>	2. <u>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u>
3. <u>공적개발원조 통계의 종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u>	3. <u>지역별 · 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 · 조정</u>
4. <u>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 조정</u>	4. <u>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u>
5. <u>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u>	5. <u>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 · 외 홍보</u>
6. <u>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 조정</u>	6. <u>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u>
7. <u>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u>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

발협력

<신 설>

⑥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

⑥ 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
용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조정
3.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
의 기획·조정
4.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5.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
기구 등과의 협력
7.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
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

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지원 · 의제 개발 및 대응 총괄
4. 녹색기후기금 재원 관련 조사 · 연구 및 재원조성 방안 검토
5.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 조사 · 연구 및 개발
7.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8.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
10. 녹색기후기금 관련 녹색산업 · 녹색금융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과 국내외 활동과의 연계 · 협력 지원
11.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
12. 기후재원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13. 그 밖에 녹색기후기금에 관

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 · 국 및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① (생 략)
- ② 삭 제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
보화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기업환경과장, 국유재산조정과
장, 재정정보과장, 참여예산과
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과
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8명,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
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① (현행과 같음)
- ③ -----

----- 금융협력과
장-----
-----.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

----- 16명-----

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 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1의2의 행정주사 <u>19명</u>으로 본다.	----- ----- ----- ----- ----- <u>17명</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57</u>	<u>1,066</u>	+9
•	•	•	
•	•	•	
일반직 계	<u>1,047</u>	<u>1,056</u>	+9
•	•	•	
•	•	•	
서기관	<u>67</u>	<u>68</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7</u>	<u>88</u>	+1
•	•	•	
행정사무관	<u>384</u>	<u>388</u>	+4
•	•	•	
행정주사	<u>126</u>	<u>128</u>	+2
•	•	•	
•	•	•	
행정주사보	<u>21</u>	<u>22</u>	+1
•	•	•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58</u>	<u>1,067</u>	+9
•	•	•	
•	•	•	
일반직 계	<u>1,048</u>	<u>1,057</u>	+9
•	•	•	
•	•	•	
서기관	<u>67</u>	<u>68</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7</u>	<u>88</u>	+1
•	•	•	
행정사무관	<u>402</u>	<u>404</u>	+2
•	•	•	
행정주사	<u>107</u>	<u>111</u>	+4
•	•	•	
•	•	•	
행정주사보	<u>22</u>	<u>23</u>	+1
•	•	•	
•	•	•	